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84

발의연월일: 2021. 8. 10.

발 의 자:이장섭ㆍ이학영ㆍ김진표

인재근・송갑석・홍성국

신정훈 · 양정숙 · 변재일

류호정 · 최혜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·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학·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대학·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지원 하고 있으나, 2019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몰 후 중소기업과 대 학·연구기관의 현장접점 역할을 해왔던 지원 전담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구축해 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거버넌스가 붕 괴 위기에 처해 있음.

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 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, 협력관계의 형성,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, 연구개발 관리,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·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.

아울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'창업보육센터'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(Business Incubator) 전담조직을 대학·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·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'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'를 설치·운 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 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산·학·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(이하 "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"라 함)을 설치·운영할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4제1항 신설).
- 나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(안 제11조의4제2항 신설).
- 다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·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함(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).

- 라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1조의4제4항 신설).
- 마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(안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).
- 바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4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등) 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(이하 "협력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 - ②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협력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
 - 2.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매칭 및 조율
 - 3.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
 - 4. 중소기업 협력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
 - 5.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
 - 6.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- 3. 협력센터가 제3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협력센터의 지정·운영·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"을 "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언 행 <u><신 설></u> | 제11조의4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 터의 지정 등) 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 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 력센터(이하 "협력센터"라 한 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 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③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협력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.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 술의 매칭 및 조율 3.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 리 |
| | 성과 분석 |

- 5.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형성및 유지
- 6.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 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
- 3. 협력센터가 제3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

제29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<u>기술진흥전문</u> <u>기관의 장</u>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